

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범주 및 확인 방법

〈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범주 및 확인 방법〉

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를 초과* 또는 4억원 초과 재산(토지·건축물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**

*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‘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’ 기준

〈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(단위: 원)〉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 (70%)	1,559,912	2,577,826	3,300,260	4,010,939	4,687,015
가구원수	6인	7인	8인	9인	10인
기준 중위소득 (70%)	5,332,858	5,960,496	6,588,133	7,215,771	7,843,408

**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지만,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,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(순자산)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

- 단, 지역별 주택가격,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

지역 구분	서울특별시	경기도	광역시세종.창원	그 외 지역
공제액	6,900만 원	8,000만 원	7,700만 원	5,300만 원

〈기본공제 예시〉

○○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, 재산(순자산)이 4억5천만 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,700만원을 공제하면, A 신청인의 재산(순자산)은 3억7천3백만 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